

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1.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42-1번지 일원의 기 결정된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A3-1BL 사업 추진에 따른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6. 25.

남 양 주 시 장

1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구 역 내		205,124.8	증) 1,638.7	206,763.5	100.0	
주거 지역	소 계	183,824.1	증) 1,638.7	185,462.8	89.7	
	제1종일반주거지역	19,714.2	-	19,714.2	9.5	
	제2종일반주거지역	164,109.9	증) 1,638.7	165,748.6	80.2	
자연녹지지역		21,300.7	-	21,300.7	10.3	

※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없음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 지역	면적(㎡)		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부평리 642-1번지 일원	제2종 일반주거 지역	164,109.9	증)1,638.7	165,748.6	250%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
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208	부평2지구	진접읍 부평리 2001번지 일원	205,124.8	증)1,638.7	206,763.5	남고 제2009-238호 (‘09.10.07)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08	부평2지구	· 면적 변경 - 205,124.8㎡ → 206,763.5㎡ (증 1,638.7㎡, 0.8%)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
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도로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중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-	중로	1	107	20.5~28.5	집산도로	202	진접읍 부평리 중2-1	진접읍 부평리 중2-2	일반도로	-	남양주35호 ('03.5.12)	
-	중로	1	312	20.5	집산도로	80(64)	진접읍 부평리 중1-302	진접읍 부평리 중2-1	일반도로	-	남양주 2014-183호 ('14.6.19)	()는구역내 연장
-	중로	2	1	16~24	집산도로	1152 (793)	진접읍 부평리 대3-101	진접읍 부평리 중2-104	일반도로	왕숙천	경고5108호 ('06.7.24)	()는구역내 연장
-	중로	2	2	15~21.2	집산도로	807 (568)	진접읍 부평리 중2-1	진접읍 부평리 중2-104	일반도로	-	경고5108호 ('06.7.24)	()는구역내 연장
-	소로	1	1	10	국지도로	137	진접읍 부평리 중2-1	진접읍 부평리 소1-2	일반도로	-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-	소로	1	2	10	국지도로	57	진접읍 부평리 소1-1	진접읍 부평리 소3-2	일반도로	-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-	소로	1	3	10	국지도로	196	진접읍 부평리 중2-1	진접읍 부평리 2029	일반도로	-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-	소로	2	234	8	국지도로	30	진접읍 부평리 중2-1	진접읍 부평리 2028	일반도로	-	남양주 2014-183호 ('14.6.19)	
-	소로	3	1	4	특수도로	250	진접읍 부평리 중2-1	1호 어린이공원	보행자 전용도로	-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-	소로	3	2	6	특수도로	8	진접읍 부평리 중1-107	진접읍 부평리 소1-2	보행자 전용도로	-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-	소로	3	3	4	특수도로	38	진접읍 부평리 중2-2	진접읍 부평리 734-25번지	보행자 전용도로	-	남양주 2022-523호 ('22.12.29)	

주) ()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

○ 도로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2	중로2-2	· 구역내 가감속구간 면적 변경 - 10,432.2㎡ → 10,367.5㎡ (감 64.7㎡, 0.6%)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소로3-3	소로3-3	· 면적 변경 - 152㎡ → 156.2㎡ (증 4.2㎡, 2.8%)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
2.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1	주차장	진접읍 부평리 2012번지 일원	1,261.4	-	1,261.4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
3. 공원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375	공 원	소공원	진접읍 부평리 2013번지 일원	546.9	-	546.9	남양주 2014-183호 ('14.6.19)	
-	1	공 원	어린이 공원	진접읍 부평리 2002번지 일원	3,089.7	-	3,089.7	남양주 2009-238호 ('09.10.7)	
-	2	공 원	어린이 공원	진접읍 부평리 2016번지 일원	1,540.2	-	1,540.2	남양주 2021-404호 ('21.10.7)	
-	3	공 원	어린이 공원	진접읍 부평리 2020번지 일원	1,500.3	-	1,500.3	남양주 2018-126호 ('18.3.12)	
-	1	공 원	체육공원	진접읍 부평리 2019번지 일원	10,355.9	-	10,355.9	남양주 2021-404호 ('21.10.7)	저류시설 포함
변경	1	공 원	문화공원	진접읍 부평리 730번지 일원	2,406.0	증)19.5	2,425.5	남양주 2022-523호 ('22.12.29)	

○ 공원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1	공 원	· 문화공원 면적변경 - 2,406.0㎡ → 2,425.5㎡ (증 19.5㎡ 0.8%)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
4. 녹지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1	녹 지	경관녹지	진접읍 부평리 중1-302호선변	2,691.1	-	2,691.1	남양주 2009-238호 (‘09.10.7)	
변경	2	녹 지	경관녹지	진접읍 부평리 왕숙천변	3,765.5	증)56.3	3,821.8	남양주 2022-523호 (‘22.12.29)	

○ 녹지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2	녹 지	· 경관녹지 면적변경 - 3,765.5㎡ → 3,821.8㎡ (증 56.3㎡ 1.5%)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
5. 학교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초1	부평 초등학교	초등학교	진접읍 부평리 2005	18,877.9 (4,661.5)	-	18,877.9 (4,661.5)	경고5108호 (‘06.7.24)	()는 부평2지구내 면적임

6. 우수지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1	우수지	저류 시설	진접읍 부평리 719-2	3,808	-	3,808	남양주 2020-470호 (‘20.12.17)	제1호 체육공원 중복결정

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		획 지						용 도
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 획지 번호	면 적 (㎡)			변경후 획지 번호	비고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-	A1	49,475.7	-	49,475.7	A1-1	49,475.7	-	49,475.7	A1-1	-	공동주택 (APT)
	A2	50,158.6	-	50,158.6	A2-1	50,158.6	-	50,158.6	A2-1	-	
	A3	30,926.5	증)1,623.4	32,549.9	A3-1	29,933.5	증)1,623.4	31,556.9	A3-1	-	
	B1	3,643.5	-	3,643.5	A3-2	993.0	-	993.0	A3-2	-	근린생활시설
					B1-1	1,349.3	-	1,349.3	B1-1	-	근린생활시설
					B1-2	316.0	-	316.0	B1-2	-	단독 및 근린생활시설
					B1-3	315.8	-	315.8	B1-3	-	
					B1-4	316.0	-	316.0	B1-4	-	
					B1-5	198.6	-	198.6	B1-5	공동 개발 허용	
					B1-6	199.6	-	199.6	B1-6	-	
					B1-7	268.6	-	268.6	B1-7	-	
					B1-8	268.5	-	268.5	B1-8	-	
					B1-9	205.4	-	205.4	B1-9	공동 개발 허용	
					B1-10	205.7	-	205.7	B1-10	-	
	B2	1,615.5	-	1,615.5	B2-1	1,261.4	-	1,261.4	B2-1	-	주차장
					B2-2	354.1	-	354.1	B2-2	-	단독 및 근린생활시설

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획지 위치	변 경 내 용	용도	변 경 사 유
A3	A3-1	· A3블럭가구 면적변경 - A3가구 : 30,926.5㎡ → 32,549.9㎡ (증 1,623.4㎡ 5.2%) · A3-1 획지면적 변경 - A3-1획지 면적 : 29,933.5㎡ → 31,556.9㎡ (증 1,623.4㎡ 5.4%)	공동 주택 (APT)	· 지적 예정(확정)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없는 면적변경

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형태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형태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가구 번호	위 치 (책 지)	구 분	제 획 내 용	비 고
A1 A2	A1-1 A2-1	용도	• 공동주택용지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, 주민편익시설)	
		건폐율	• 20% 이하	
		용적률	• 241% 이하	
		높이	• APT : 최고층수 33층 이하 • 부대시설 : 3층 이하	
		배치	• 채광 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	
		형태	• 지붕은 경사지붕과 LAND MARK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·유도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10m (단지내 상가 및 부대시설은 제외)	
A3	A3-1	용 도	• 공동주택용지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, 주민편익시설)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(2호, 5호, 9호~11호, 13호, 14호 제외) • 「남양주시 건축조례」 제20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(1호, 2호, 5호, 9호, 13호, 14호 제외)	
		건폐율	• 20% 이하	
		용적률	• 245% 이하	
		높 이	• APT : 최고층수 29층 이하 • 부대시설 : 3층 이하	
		배 치	• 채광 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	
		형 태	• 지붕은 경사지붕과 LAND MARK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·유도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중로2-2호선변 10m(단지내 상가 및 부대시설은 제외) • 공공보행통로 : 단지 중앙부 폭원 25m (공공보행통로(폭원25m)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보행통로를 관리하고 상시 개방토록 명시하여, 공공보행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)	

가구 번호	위 치 (책 지)	구 분	제 획 내 용	비 고
A3	A3-2	용도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, 제9호 의료시설의 ‘가’ 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만 해당),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, 제14호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‘라’ (의원 등), ‘자’ (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제외한 금융업소등), 제4호의 ‘카’ (학원 등), ‘타’ (독서실 등), ‘하’ (부동산 중개사무 소를 제외한 금융업소 등)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허용 연면적의 40%미만 설치 - 단,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 불허,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관련되는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설치금지 * 건축연면적대비 부설주차장 기준의 110%이상 확보하고,기계식 주차장 설 치 불가	
		건폐율	• 50%이하	
		용적률	• 200%이하	
		높 이	• 4층(17m) 이하	
		색채등	• 색채계획 -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 하며 채도5이하로 하여야 한다 - 가로의 연속성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통일성 조화를 위하여 유사재료를 사 용하여야 한다. - 건축물의 좌우배면의 색채는 전면 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• 옥외 광고물 계획 - 수량 :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업소당 2개에 한한다 - 가로형 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 이하로 제한한다. ② 세로의 크기는 1.0m로 제한한다. - 돌출형 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 이하로 하고 가로의 크기는 건축물 벽면에서 80cm 이내로 한다 ②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이상으로 한다. - 기타 ①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(2개)내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 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토록한다 ②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금지한다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3m(중로변)	

가구 번호	위 치 (획 지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B1	B1-1	용 도	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제9호 의료시설의 ‘가’ 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만 해당),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, 14호 업무 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‘라’ (의원 등), ‘자’ (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제외한 금융업소 등), 제4호의 ‘카’ (학원 등), ‘타’ (독서실 등), ‘하’ (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제외한 금융업소 등)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허용연면적의 40% 미만 설치 - 단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 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 집회장내 납골당 불허,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와 관련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금지 * 건축연면적 대비 부설주차장 기준의 110% 이상 확보하고,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가	
		건폐율	• 50% 이하	
		용적률	• 200% 이하	
		높 이	• 4층(17m) 이하	
		색채등	- 색채계획 -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 하며 채도5이하로 하여야 한다. - 가로의 연속성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통일성 조화를 위하여 유사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- 건축물의 좌우배면의 색채는 전면 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- 옥외 광고물계획 - 수량 :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업소당 2개에 한한다. - 가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제한한다. ② 세로의 크기는 1.0m로 제한한다. - 돌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하고 가로의 크기는 건축물 벽면에서 80cm 이내로 한다. ②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이상으로 한다. - 기타 ①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(2개)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. ②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금지한다.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2m(소로변), 3m(중로변)	

가구 번호	위 치 (획 지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B1	B1-2-10	용 도	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 주택(6호이하), 제2호의 다목 다세대 주택,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-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 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 집회장내 납골당 설치,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,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40%이하 허용	
		건폐율	• 50% 이하	
		용적률	• 200% 이하	
		높 이	• 4층(16m) 이하	
		배 치	• B1-7, 8획지의 경우 인접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	
		색채등	- 색채계획 -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 하며 채도5이하로 하여야 한다. - 가로의 연속성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통일성 조화를 위하여 유사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- 건축물의 좌우배면의 색채는 전면 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- 옥외 광고물계획 - 수량 :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업소당 2개에 한한다. - 가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제한한다. ② 세로의 크기는 1.0m로 제한한다. - 돌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하고 가로의 크기는 건축물 벽면에서 80cm 이내로 한다. ②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이상으로 한다. - 기타 ①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(2개)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. ②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금지한다.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2m(소로변), 3m(중로변)	

가구 번호	위 치 (획 지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B2	B2-1	용 도	- 주차장(노외주차장) - 허용용도 :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,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- 단,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고시원 제외)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5%이상 이어야 함	
		건폐율	• 60% 이하	
		용적률	• 240% 이하	
		높 이	• 4층(17m)이하	
		색채등	• 색채계획 -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 하며 채도5이하로 하여야 한다. - 가로의 연속성 및 주변지역 경관 과의 통일성 조화를 위하여 유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- 건축물의 좌우배면의 색채는 전면 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• 옥외 광고물계획 - 수량 :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업소당 2개에 한한다. - 가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제한한다. ② 세로의 크기는 1.0m로 제한한다. - 돌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하고 가로의 크기는 건축물 벽면에서 80cm 이내로 한다. ②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이상으로 한다. - 기타 ①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(2개)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. ②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금지한다.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2m(소로변), 3m(중로변)	

가구 번호	위 치 (획 지)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B2	B2-2	용 도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 주택(6호이하),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.다세대주택, 제3호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,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-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 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 집회장내 납골당 설치,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,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40%이하 허용	
		건폐율	• 50% 이하	
		용적률	• 200% 이하	
		높 이	• 4층(16m)이하	
		색채등	• 색채계획 -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 하며 채도5이하로 하여야 한다. - 가로의 연속성 및 주변지역 경관 과의 통일성 조화를 위하여 유사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- 건축물의 좌우배면의 색채는 전면 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• 옥외 광고물계획 - 수량 :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 업소당 2개에 한한다. - 가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제한한다. ② 세로의 크기는 1.0m로 제한한다. - 돌출형간판 ① 간판의 위치는 2층이하로 하고 가로의 크기는 건축물 벽면에서 80cm 이내로 한다. ②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.0m이상으로 한다. - 기타 ①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(2개)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. ②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금지한다.	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 : 2m(소로변), 3m(중로변)	

※ 공통사항
- 지정용도 외의 용도 불허

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가설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- 변경없음

구분	계획내용
관리원칙	건축법 제20조, 건축법 시행령 제15조,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0조에 적합하게 건축·축조되어야 하며 해당법규 및 조례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특정 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고,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없이 해제 또는 철거하여야 함.
허용용도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(제2호, 제5호, 제9호~제11호, 제13호, 제14호 제외) - 이 중 제1호, 제3호, 제4호 외의 가설건축물은 획지별 주 용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허용함 「남양주시 건축조례」 제20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(제1호, 제2호, 제5호, 제9호, 제13호, 제14호 제외) ※불허용도 :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안전 등 관리방안	가설건축물의 건축 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재질의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함
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	가설건축물의 건축 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간 거리의 이격을 권장함
기타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	-

2. 차량 출입구간 및 전면공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- 변경없음

가구 번호	위 치 (획 지)	도면 표시 번호	계 획 내 용	비 고
A1	A1-1	A-1 B-1	- 차량출입 허용구간 - 중1-107호선변 : 공동주택 출입구 - 중2-2호선변 : 공동주택 출입구 - 차량출입 불허구간 -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불허	
A2	A2-1	A-2 B-2	- 차량출입 허용구간 - 중1-107호선변 : 공동주택 출입구 - 중2-2호선변 : 공동주택 출입구 - 차량출입 불허구간 - 차량 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불허	
A3	A3-1 A3-2	A-3 B-3	- 차량출입 허용구간 (기정) 중2-2호선변 : 공동주택 출입구 (변경) 중2-2호선변 : 공동주택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- 차량출입 불허구간 - 차량 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전구간 불허	
B1	B1-1	A-4 B-4	- 차량출입 허용구간 - 중2-1호선변 : 근린생활시설용지 출입구 (15m구간) - 차량출입 불허구간 - 중로2-1호선 전구간 불허 - 전면공지 - 중로2-1호선변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해 발생되는 공지(B=3m)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,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고, 전면공지는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해야 함 -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에는 공작물, 담장, 계단, 주차장,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, 차량의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블라드 등을 설치해야 함	
B1	B1-2-10	A-5 B-5	- 차량출입 허용구간 - 소1-1호선변, 소1-2호선변 :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등 출입구 - 차량출입 불허구간 - 중로2-1호선, 중로1-312호선 전구간 불허 - B1-2, B1-9획지 소로1-1호선 및 소로1-2호선 접속 각각부 전구간 불허	
B2	B2-1, 2	A-6 B-6	- 차량출입 허용구간 - 소2-234호선변 : 주차장,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- 차량출입 불허구간 - 중로2-1호선, 중로1-312호선 전구간 불허	